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7호 (2021-02)
발행일 2021. 2. 15.
ISSN 2092-7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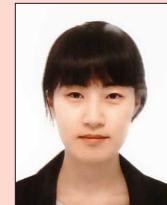
발행인 조홍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학대·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 현황과 과제¹⁾



김유희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인권보호 의식의 발전과 함께 학대·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변화하고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 또한 강화되어 왔음. 학대·폭력에 대한 사법적 정의와 함께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며, 보호서비스는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사전·사후적 개입을 모두 포함함.
- 국내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는 피해 대상, 폭력의 유형 등에 따라 영역이 구분되고 영역별 개입의 수준이 상이함.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를 지원하고 학대·폭력을 예방하는 보호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음.
-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공통적 접근 방식과 서비스의 지향점을 정립하고 현행 보호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학대·폭력 문제에 개입하는 보호서비스 체계의 권한을 강화하고 피해자, 피해자 가족, 가해자(행위자) 대상 서비스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01. 들어가며

◆ 학대·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확대됨

- 인권보호 의식의 발전과 함께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변화하였음.

1) 이 글은 김유희 외. (2019).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에 대한 기초 연구』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폭력은 오랜 역사 속에서 존재해 왔으며, 근대적 인권 개념이 등장하고 인권의식이 강화되면서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변화해 옴.
- 특정 학대 및 폭력 사건이 이슈화될 때마다 일반 대중이 학대·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제감하고 학대·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 또한 강화되어 왔음.
 - 약자에 대한 학대·폭력 문제를 공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 특히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은 과거에는 가족문제로 치부되었으나 점차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이 변화하였음.
 -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의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 등의 개입 필요성이 확대되어 왔음.

◆ 학대·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를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난해 말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등의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최근 학대 문제에 대한 개입의 강화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학대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학대·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의 근거와 범위를 살펴보고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국내 보호서비스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02.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공적 개입의 필요성

◆ 학대·폭력의 개념과 구조적 특징

- 폭력과 학대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성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특히 학대는 착취, 감금, 비자발적 고립까지 포괄하는 개념임(Fawcett & Waugh, 2008, pp. 1-2).
 - 세계보건기구는 폭력(violence)을 자신이나 특정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위협 등을 하여 신체적 상해, 심리적 피해, 죽음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정의함(WHO, 2002, p. 4).
 - 학대(abuse)는 폭력(violence)의 발현에 해당하고 폭력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개인 및 집단 등의 환경과 관련이 있음(Fawcett & Waugh, 2008, p. 1).
- 학대와 폭력은 물리적 힘이나 위계, 의존, 취약성 등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서 기인함.
 - 취약한 대상이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나 착취를 경험할 위험이 높음(Brown, 2004, p. 24; Mosqueda et al., 2016, p. 1880).
 - 약자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학대·폭력의 경우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 의해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음.
 - 학대·폭력을 야기하는 불균등한 구조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학대·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근거

-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장은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공공 개입의 근거가 됨.
 - 학대·폭력은 사회문화와 규범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의되어 왔음.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학대·폭력 문제와 공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하였음.
 -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유엔의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등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 가해지는 학대 및 폭력 문제에 대한 국가의 노력을 강조하였음(OHCHR, 2019a; 2019b; UN, 2002; 2019).
- 학대·폭력에 대한 사법적 정의와 함께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
 - 학대나 폭력이 초래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장기적 피해를 고려할 때 가해자 처벌 등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접근이 요구됨.
 - 특히 아동기 폭력은 장기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와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비행 및 반사회적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권희경, 장재홍, 2003, p. 44; 류정희 외, 2018, pp. 345-347; 이유진, 2012, p. 269).
- 학대·폭력은 전이되고 순환·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됨.
 - 폭력 경험은 폭력의 순환이나 세대 간 전이와 같은 특징을 보임(Children’s Bureau, 2016, p. 4; 이인선, 황정임, 최지현, 조윤수, 2017, p. 233).
 - 폭력 피해자는 생애주기에 걸쳐 피해와 가해의 경험을 교차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류정희, 이주연, 송아영, 이근영, 이미진, 2016, p. 165).
-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나 사회규범이 새로운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WHO, 2009, p. 4).

03.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의 특징과 범위

◆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 제도와 규범 등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보호체계가 발전해 왔음.
 - 인권 개념의 확대, 폐미니즘 운동의 발전, 아동권리 옹호 운동의 확대 등 일련의 변화 과정에서 약자에 대한 학대·폭력은 사적 영역의 문제에서 점차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
- 학대·폭력 문제에 대응하여 보호체계 혹은 보호서비스의 개념이 사용될 수 있음.
 - 미국 법제도에서 아동학대와 성인학대(노인과 장애인)에 대응하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구조 등의 서비스를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로 명명함.

- 이 글에서는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보호서비스로 정의함.
- 학대·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서비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개입을 강조함.
 - 일반적 사회복지서비스와 비교할 때, 보호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비자발적일 수 있고 서비스가 개입되면 대상자의 안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서비스를 철회할 수 없다는 특징을 보임(조홍식, 2016, p. 30).
 - 예를 들어 아동학대의 경우 사법체계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기소 등의 과정을 수행함에 따라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의 의지가 전문가의 개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부모의 자기결정권은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Meysen & Grawe, 2019, pp. 135, 142, 146).

◆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의 범위

- 학대·폭력 문제에 대응하여 사전·사후적 개입이 모두 이루어져야 함.
 - 보호서비스는 학대·폭력에 개입하는 사회서비스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학대·폭력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모두 포함함.
- 보호서비스의 범위는 위기에 대한 긴급 지원, 피해자의 장기적 치유와 회복의 지원, 학대·폭력 재범 방지 및 예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학대·폭력 피해자 긴급 지원, 장기적 보호 및 치료 지원, 학대·폭력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적 접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예방 교육 등 지역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함.
- 따라서 보호서비스는 학대·폭력의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가해자(행위자),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보호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 학대·폭력 문제와 대상자별 특징에 대한 지식과 실천기술
 - 폭력 문제를 다루는 휴먼서비스 전문가는 폭력의 본질과 통제 방법을 숙지해야 함(Hanlon, 2008, p. 23).
 -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피해자별 특징을 이해하고 대상자별 학대·폭력의 맥락을 고려하여 사정을 진행하는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함.
- 학대·폭력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
 - 학대·폭력 문제에 개입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례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의 과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폭력 이슈에 대한 인식과 식별 능력을 갖추어야 함(Banks, Landsverk & Wang, 2008, p. 904).
 - 서비스 제공자는 학대·폭력의 징후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해야 하고(Hagemann-White, 2019, p. 97), 조사 과정의 법적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지식까지 갖출 필요가 있음.
- 학대·폭력 피해자의 장기적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
 - 잘 훈련된 서비스 제공자는 폭력으로 인한 외상이나 낙인을 경험하는 피해자를 치료로 이끌 수 있음(Garcia-Moreno et al., 2015, p. 1573).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지원하는 다양한 개입 방법을 숙지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

- 학대·폭력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협력체계 구축 역량
 - 학대·폭력과 함께 빈곤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에 대한 개입 기술과 자원 연계를 위한 지식이 요구됨. 또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능력도 중요함(Healey, Connolly & Humphreys, 2018, p. 234).

04.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국내 보호서비스 체계

- ◆ 한국에서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서비스는 피해 대상, 폭력의 유형 등에 따라 영역이 구분되고 영역별 개입의 수준이 상이함

- 피해자–가해자(행위자) 관계의 위계성, 피해자의 취약성 및 의존성에 근거하여 공공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그림 1]과 같이 피해 대상, 폭력 유형, 공간 등에 따라 구분됨.
- 영역별로 학대·폭력의 정의, 피해 대상, 학대·폭력의 유형, 발생 현장 등이 상이하고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개입 수준과 방식에도 차이가 존재함.
 - 각 영역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피해자 지원과 학대·폭력 예방에 개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를 지원하고 학대·폭력을 예방하는 보호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음.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폭력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한편, 군대, 직장의 경우 위계적 구조를 바탕으로 가혹행위나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나 이에 대응하는 별도의 사회복지적 보호체계가 구성되지 못하였음.

[그림 1] 피해자 집단, 유형, 공간에 근거한 폭력·학대 영역 구분



주: 류정희 외. (2016).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4의 연구 대상 범위를 참고하여 폭력·학대 영역을 정리함.

자료: 김유희, 최미진, 흥문기, 류진아. (2019).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에 대한 기초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

◆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

-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에 대응하는 영역별 전달체계가 운영되고 있음.
 - 아동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노인과 장애인은 가족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거나 의존적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학대는 더욱 공공의 사회복지적 개입을 필요로 함.
-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지역별 전문기관과 보호시설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예방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노인학대와 장애인학대의 경우 지역별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장애인 권리옹호기관에서 학대의 신고 접수, 학대 피해 조사 및 판정, 피해자 보호 및 응급 대응, 피해 회복을 위한 서비스(상담, 심리치료, 의료, 법률 지원 등) 제공, 서비스 연계, 예방 교육, 지역 내 학대 예방 사업 등을 수행하고 보호시설(쉼터)에서 피해자 보호 및 서비스 지원을 수행함.
 - 아동학대의 경우 기존에는 노인 및 장애인 영역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아동보호 업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0년 10월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되면서 학대 조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음.
 - 세 영역의 보호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과 지역별 전문기관, 지역별 보호시설(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만 아동 영역의 경우 조사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음. 각 영역별 주요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볼 수 있음.
- 지역별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이 사전·사후적 보호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세 영역의 주요 전달체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 6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34개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8개소로, 이들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례에 대해 위에서 제시한 역할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세 영역의 보호서비스는 피해자, 피해자 가족, 가해자(행위자), 지역사회까지 개입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별 전달체계 수준에서는 피해자 외의 대상까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기관당 인력 기준이 4인(기관장 1인, 상담원 2인, 행정인력 1인)으로 되어 있어 관할 지역 학대 사례 조사와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

〈표 1〉 영역별 보호서비스 현황

구분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기준	피해 대상에 따른 구분			폭력의 유형 및 특징(젠더 폭력)에 따른 구분	
학대·폭력 현황 (2019년 기준)	신고 접수: 41,389건 학대 의심 사례: 38,380건	신고 접수: 16,071건 학대 사례: 5,243건	신고 접수: 4,376건 학대 의심사례: 1,923건	1366센터 상담 건수: 20,771건	1366센터 상담 건수: 206,885건
근거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서비스 전달체계	시군구 자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 포함),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 포함), 피해장애인 쉼터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 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²⁾ 및 응급보호, 피해 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 학대 행위자 대상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등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지원,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복지 지원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사례판정, 노인 학대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학대 피해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상담,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정보 제공 등) 및 사후관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교육 등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 피해 노인 보호 및 숙식 제공, 전문 심리 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기본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피해자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업무 등 -피해장애인 쉼터: 보호 기능, 심리 지원 및 상담 지원, 의료기관 인도 등 의료 지원, 사회복지 지원 등	-해바라기센터: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자 신고접수 및 긴급 상담, 긴급구조 및 보호, 위기상담 등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 접수, 상담 지원, 보호시설 인도, 법률구조기관 연계, 의료 지원,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 등의 동행, 법률구조 협조 및 지원 요청, 성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 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의료 지원,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 등의 동행, 법률구조 협조 및 지원 요청 등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피해자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 긴급구조 및 보호, 위기상담 등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 관련 신고 및 상담, 피해자 및 피해자 동반 가족 임시 보호, 의료기관 및 보호시설 인도, 법률구조기관 연계,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기관 인도 등 의료 지원, 수사·재판 과정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협조 및 지원 요청, 자립 지원, 입소에 대한 비밀보장 및 특별보호, 피해자녀의 취학 지원 등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019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67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73개소	(2019년 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 제외) 34개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9개소	(2020년 6월 기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 제외) 18개소 (2020년 1월 기준) -피해장애인 쉼터 17개소	(2020년 1월 기준) -해바라기센터 40개소 -1366센터 18개 -성폭력피해상담소 168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2개소	(2020년 1월 기준) -1366센터 18개소 -가정폭력 상담소 208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66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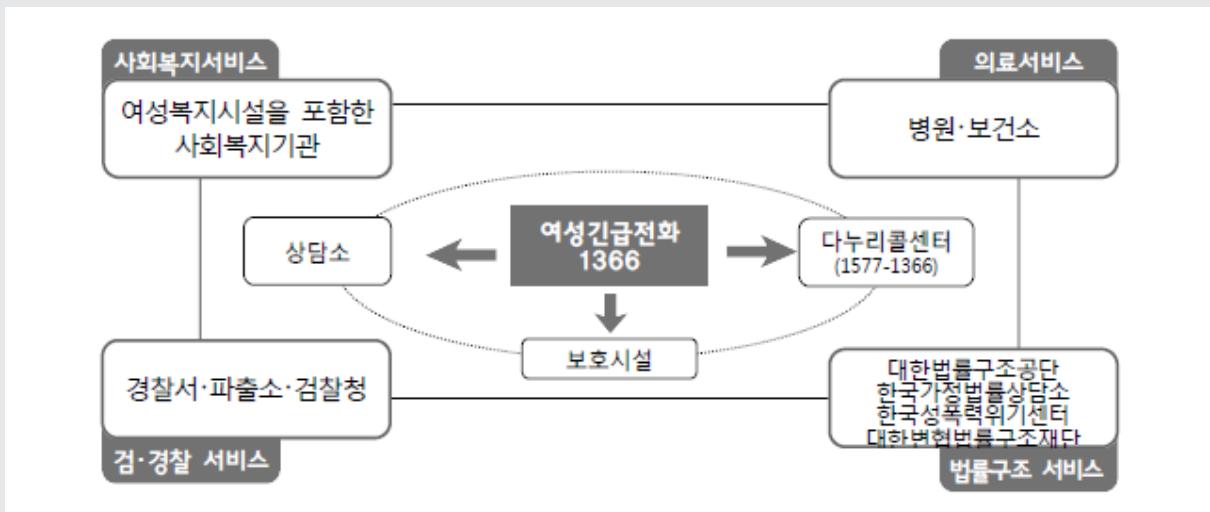
자료: 김유휘 외. (2019).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에 대한 기초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장 2절; 보건복지부. (2020a).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pp. 14, 36, 61; 보건복지부. (2020b). 2020 노인복지시설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p. 5;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0).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p. 16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 2019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pp. 62, 190; 여성가족부. (2020).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p. 2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2019 여성폭력 초기지원 현황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p. 23을 참고하여 저자가 표를 구성함.

2)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사업무는 지자체로 이관되었음.

◆ 성폭력, 부부폭력(가정폭력)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

- 성폭력과 부부폭력(가정폭력)은 젠더 기반 폭력으로 공공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임.
 -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함. 부부폭력(가정폭력)의 경우 가족제도와 규범하에서 경제적 종속성과 의존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개입을 더 필요로 함.
- 성폭력과 부부폭력(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전달체계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여성가족부가 성폭력과 부부폭력(가정폭력)의 주관 부처로서 피해자 지원과 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함.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게이트웨이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성폭력과 부부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상담, 긴급보호, 긴급피난처 제공,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함.
 - 성폭력피해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과 예방 사업 등이 수행되고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피해자 보호와 상담 등의 서비스 지원(상담, 자립지원, 의료, 법률 등)이 이루어짐(표 1).
 - 또한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심리치료, 의료 지원, 수사 지원, 법률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부부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지원, 수사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함.

[그림 2] 지역별 가정폭력 네트워크 운영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2020).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p. 444.

- 성폭력과 부부폭력(가정폭력) 보호체계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담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함.

-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호체계는 신고 접수, 위기개입(초기 상담 및 긴급보호, 긴급피난처 제공), 의료 지원, 상담 지원, 수사 지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법률 지원, 주거 및 보호 지원,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로 이루어짐.
- 부부폭력(가정폭력)의 경우 입건과 사건 처리까지 진행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더욱 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영역임(김유휘 외, 2019, pp. 87-88).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법절차와 별개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자(부부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학교폭력에 대한 보호서비스

-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학생 대상 폭력에 대응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행위로 규정함.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는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조치 결정(자치위원회 심의 및 의결, 학교장 처분), 조치 등의 과정을 수행함(교육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8, pp. 8-9).
 - 학교 내에서 Wee클래스가 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시 지역 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SOS지원단,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등의 지원이 가능함.

05. 마치며

◆ 학대·폭력 문제에 개입하는 공통적 관점과 공공의 책무가 강조되어야 함

- 이전까지 복지 영역에서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라는 공통적 관점이 부재하였음.
 -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성폭력, 부부폭력과 같이 보호체계가 제도화된 영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학대에 대응하는 공통의 서비스라는 인식이나 제도적 규정이 부재함.
-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공통적 접근 방식과 서비스의 지향점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 일반 사회복지서비스보다 특화된 서비스로 보호서비스의 직무와 기술에 대한 공통적 기준이 정해질 필요가 있음.
- 사회 전반의 학대·폭력 문제 근절을 위해 보호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무와 지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현행 보호서비스 체계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대·폭력 문제에 개입하는 보호서비스 체계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호서비스 인력이 학대를 조사·판정하고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개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보호체계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는 기준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학대·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과 장기적 지원 모두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피해가 심각하거나 가해자(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 수준이 높은 경우 피해자 회복과 학대·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 지원이 중요함.
- 최근 이슈가 된 아동학대 사건들의 경우에도 학대 징후를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와 함께, 피해 아동에 대한 장기적 보호와 치료가 충분히 지원되어야 함.
- 특히 아동학대 사건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지역별 보호시설을 확충하여 보호 대상인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 가족 및 가해자(행위자) 대상 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조차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 및 가해자(행위자) 대상 개입은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피해자 회복과 학대·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족 및 가해자(행위자) 대상 개입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공공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미국 텍사스주와 뉴욕주의 사례³⁾를 참고하여, 가족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개입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호서비스 체계에서 가해자(행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개입 조치를 다양화하고 개입의 강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호서비스 전달체계와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방안이 필요함.
 - 지역별 보호서비스 제공기관 분포를 고려할 때, 피해자 회복 지원, 가족 및 가해자 대상 개입, 지역사회 대상 예방사업 등을 모두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사업무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큼.
 - 현행 제공기관 분포와 인력의 근로조건을 고려할 때,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원 부족과 전문성 강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호서비스의 제공 수준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제공 인력 규모를 확충하고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3)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즉각적인 위협이 없다고 판단되는 아동학대 사례 중 일부를 차등적 대응체계(AR: Alternative Response)로 배정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계획에 초점을 맞춘 가족 대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뉴욕주의 경우 일반적인 학대조사에 비해 가족에게 유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사정 대응체계(FAR: Family Assessment Response)를 시행하고 있음(김유희 외, 2019, pp. 162-164).

〈참고문헌〉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세종: 교육부.
- 권희경, 장재홍. (2003).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순응적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pp. 35–47.
- 김유휘, 최미진, 흥문기, 류진아. (2019).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에 대한 기초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 이주연, 송아영, 이근영, 이미진. (2016).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 전진아, 이상정, 이주연, 정익중, 유민상. (2018).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연구: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0a).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b). 2020 노인복지시설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0).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 2019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2020).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이유진. (2012).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Ⅰ.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인선, 황정임, 최지현, 조윤수. (2017). 가정폭력실태와 과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흥식. (2016). 아동학대, 의무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월간 복지동향*, 211, pp. 26–31.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2019 여성폭력 초기지원 현황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Banks, D., Landsverk, J., & Wang, K. (2008). Changing policy and practice in the child welfare system through collaborative efforts to identify and respond effectively to family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7), 903–932.
- Brown, H. (2004). Violence against vulnerable groups. Council of Europe.
- Children's Bureau. (2016). Intergenerational patterns of child maltreatment. Issue Brief, 201608, 1–19.
- Fawcett, B., & Waugh, F. (Eds.). (2008). Addressing violence, abuse and oppression: Debates and challenges. Routledge.
- Hanlon, M. (2008). Men and violence, in : Fawcett, B., & Waugh, F. (Eds.). (2008). Addressing violence, abuse and oppression: Debates and challenges (pp. 17–24). Routledge.
- Hagemann-White, C. (2019). Redres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Institutional frameworks of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in four countries, in : Hagemann-White et al. (Eds.). (2019). *Interventions against child abuse and violence against women: Ethics and culture in practice and policy* (pp. 87–103). Verlag Barbara Budrich.
- Healey, L., Connolly, M., & Humphreys, C. (2018). A collaborative practice framework for child protection and specialist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services: Bridging the research and practice divide. *Australian social work*, 71(2), 228–237.
- Meysen, T & Gafe, N. (2019). Protec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 Hagenmann-White et al. (Eds.). (2019). *Interventions against child abuse and violence against women: Ethics and culture in practice and policy* (pp. 134–150). Verlag Barbara Budrich.
- Mosqueda, L., Burnight, K., Gironda, M. W., Moore, A. A., Robinson, J., & Olsen, B. (2016). The abuse intervention model: A pragmatic approach to intervention for elder mistrea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64(9), 1879–1883.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019a).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trieved from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2019.10.22.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019b).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Retrieved from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violenceagainstwomen.aspx>. 2019.10.22.
- United Nations; UN. (2002).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Retrieved from <https://www.un.org/development/desa/ageing/madrid-plan-of-action-and-its-implementation.html>. 2019.10.22.
- United Nations; UN. (201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trieved from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2.html>. 2019.10.22.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summary. Geneve: World Health Organization.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9). Changing cultural and social norms that support violence. Geneve: World Health Organization.

집필 김유휘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044-287-8208